

##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b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"서비스"란 "은행"이 "오픈뱅킹공동업무"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"사용자"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 및 <u>은행</u>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총칭합니다.</p> <p>7. "추심이체"라 함은 "수취인"의 추심지시에 따라 <u>은행</u>이 "지급인"의 "출금계좌"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<u>은행</u> 또는 <u>다른 은행의</u>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8. "운영기관"이란 "오픈뱅킹공동업무"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, "참가기관"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·입금,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<u>다른 은행</u>을 말합니다.</p> <p>9. "오픈뱅킹공동업무"란 "참가기관"이 "운영기관"의 『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』에 동의하여 "운영기관"의 "오픈뱅킹공동업무" 중계시스템과 "참가기관"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"참가기관" 내의 금융서비스를 "은행"이 다른 <u>은행</u>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"사용자"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.</p>	<p><b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"서비스"란 "은행"이 "오픈뱅킹공동업무"로서 본 약관에 의하여 "사용자"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 및 "<u>은행</u>"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총칭합니다.</p> <p>7. "추심이체"라 함은 "수취인"의 추심지시에 따라 "<u>은행</u>"이 "지급인"의 "출금계좌"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"<u>은행</u>" 또는 <u>다른 기관의</u>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8. "운영기관"이란 "오픈뱅킹공동업무"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하며, "참가기관"이란 오픈뱅킹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·입금,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<u>기관</u>을 말합니다.</p> <p>9. "오픈뱅킹공동업무"란 "참가기관"이 "운영기관"의 『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』에 동의하여 "운영기관"의 "오픈뱅킹공동업무" 중계시스템과 "참가기관"의 처리시스템을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다른 "참가기관" 내의 금융서비스를 "은행"이 <u>다른 기관</u>과 별도 제휴 계약 없이 "사용자"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.</p>	<p>다음표 사용 규칙 통일(전체 동일하게 변경처리)</p> <p>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</p> <p>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</p> <p>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 <p><b>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</b></p> <p>1. 조회 서비스: “사용자”가 <u>은행</u>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,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</p> <p><b>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)</b></p> <p>③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를 위해 “운영기관”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“참가기관”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<u>은행 중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</u>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사용자”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“서비스”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 5 조 (이체대상 및 출금한도)</b></p> <p>② “사용자”의 <u>전 은행</u>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이체 서비스의 일일 이용한도는 “운영기관”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.</p> <p>③ “출금계좌”의 출금가능금액(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체 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거래가 제한됩니다. 또한 “출금계좌”에 등록된 지급정지 등 법적제한, 금융거래 한도계좌 등 “출금계좌”의 <u>은행</u>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<p><u>12. “모바일기기”란 이동통신망 또는 와이파이 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, 태블릿 PC, 스마트워치, 웨어러블 장비 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.</u></p> <p><b>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</b></p> <p>1. 조회 서비스: “사용자”가 <u>“은행”</u>이 제공하는 “서비스”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, <u>계좌정보</u>,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</p> <p><b>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)</b></p> <p>③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를 위해 “운영기관”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“참가기관”의 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<u>기관의 영업점 창구에서</u>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사용자”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“서비스”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 5 조 (이체대상 및 출금한도)</b></p> <p>② “사용자”의 <u>전 기관</u>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이체 서비스의 일일 이용한도는 “운영기관”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.</p> <p>③ “출금계좌”의 출금가능금액(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체 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거래가 제한됩니다. 또한 “출금계좌”에 등록된 지급정지 등 법적제한, 금융거래 한도계좌 등 “출금계좌”의 <u>“은행”</u>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용어 정의 추가</p> <p>제공 정보 추가</p> <p>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</p> <p>표기 방법 통일</p> <p>표기 방법 통일</p>
--	---	--

<p><b>제 12 조 (서비스의 중단)</b> 6. <u>회사가</u>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</p> <p><b>제 14 조 (준수사항)</b> ⑤ 사용자가 송금금액, 수취<u>은행</u>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(이하 “착오송금”이라 합니다)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「내부 규정」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</p>	<p><b>제 12 조 (서비스의 중단)</b> 6. <u>“은행”이</u>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<b>제 14 조 (준수사항)</b> ⑤ <u>“사용자”</u>가 송금금액, 수취<u>기관</u>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(이하 “착오송금”이라 합니다)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『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,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「내부 규정」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</p>	<p>용어 정정</p> <p>참가기관 추가에 따른 용어 변경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